

		시 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864	★담당자	전산기획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일자	2013.1.28.	한상일	정재후	이종순	01/28 조성완
공개여부	비공개	협 조			전재필
방침번호		전문위원			

적정한 수행업체 선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적정한 수행업체 선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사업수행 능력과 기술인력 등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I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2012.12.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2012.6.27시행)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안전지원과-29187(2012.12.24)호 “2013년 소방재난본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획”

## II 사업 개요

- 사업명 : 소방재난본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계약방법 :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 금829,3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소방재난본부 정보통신기계실 운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소방재난본부(산하기관 포함)가 보유중인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 소방재난본부(산하기관 포함) 홈페이지 운영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 수정 등

### III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행안부예규제438호(2013.1.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인 원 : 총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1명(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및 제안서 평가 참여)

○ 위 원 : 6명

※ 시민감사 : 1명(옴부즈만) 참석

■ 위원선정 방법

○ 서울시 정보화 평가위원전문 인력풀 49명(7배수) 추천 및 예비명부 고유번호 지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에게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

### IV 평 가 계 획

■ 일 시 : 2013. 2. 7(목) 13:30 ~ 18:00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

■ 평가배점 : 기타 세부지표[붙임] 참조

○ 근 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2013.6.27 시행)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배점 : 종합점수 = 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인력 보유상태</li> <li>◦ 수행경험(실적)</li> <li>◦ 경영상태, 신인도 등</li> <li>◦ 우수기업 등 가점 (최고 12.6점)</li> </ul>	20	◦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 등</li> </ul>	70	◦ 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입찰가격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위원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 잔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 업체 선정

## ■ 청렴계약 감시 활동 이행을 위한 시민감사 **옴부즈만** 입회

- 근 거 :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입 회 자 :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1명
- 활동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사항 감시(2.7)
  -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감시는 자체 감사반 입회(2.5)

## VI

## 수당지급

### ■ 집행예산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평가위원 : 금700,000원 = 7명 X 100,000원(4시간 기준)
- 시민감사 : 금100,000원 = 1명 X 100,000원(4시간 기준)

### ■ 예산항목 :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기타보상금(301-12)

- 붙임 1. 평가위원 전문분야 및 인원 1부.  
2.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1부.  
3. 평가세부 기준 및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평가위원 전문분야 및 인원

전문분야	위원 수	예비명부 인원
계	7명	49명
정보보호	2	14
정보시스템	2	14
콘텐츠	1	7
IT 전략	1	7
유비쿼터스	1	7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진 행 내 용	비 고
제1부	개 회 (50분)	위원소개 및 인사말씀	
		위원장 선출 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및 서약서 징구	
		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설명	
		평가방법 및 사전 의결사항 결정	
제2부	제안설명 및 질의 (150~180분)	제안서 검토(90분)	
		제안설명(각 업체 15분)	
		질의응답(각 업체 15분)	
제3부	기술평가 (30분)	기술평가 및 집계	
		집계결과 확인	
제4부	협상순서 확정 (30분)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평가결과 최종확정	
제5부	평가결과 공개(10분)	각 업체 대표자 평가결과 열람	

[붙임 3]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종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수행경험(실적)	실적금액	3	6
			실적건수	3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 신인도		2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등		가산점(6.6)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가산점(6)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감점(-5)		
	정성적 평 가	▪ 일반사항		15	
		▪ 조직부문		15	
		▪ 기술부문		15	
▪ 비서관리부문		15			
▪ 품질보증 부문		1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합 계				100	



##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인력의 기술등급	6	기준점수비례제
사업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1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실적 합계 금액 및 실적건수 합계	6	상대평가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 기술(품질) 인증보유 - 하도급관련 - 혁신형 중소기업	2	절대평가제
가산점	- 우수업체 및 당해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업체 ※우수업체, 및 당해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업체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12.6	절대평가제
합 계		20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6점)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지표 :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상주인력의 경력사항
- 평점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점 수	5	4	3	2	1	0.5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붙임 2] 적용

- 배점(6점) x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비 고

- 참여 인력에 대한 기술상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에 한함

나. 사업수행경험(6점) : 상대평가제

- 평가지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실적금액(3점) 및 실적건수(3점)

○ 평점방법 :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가

○ 비 고

-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만 실적 인정

※ 발주기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업체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금액 기준 건당 1억원 이상의 실적만 평가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분담비율만큼 실적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분담비율(참여비율)만큼 실적을 인정함

- 상대적 등급평가,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일점수 발생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평가

다. 경영상태(6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 A1 A2+	AAA AA+, AA0, AA-	6.00
A+	A20	A+	
A0	A2-	A0	
A-		A-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비교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2점) : 절대평가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1) GS(국산 우수 S/W) 인증제품 보유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1.0 (감점1)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감점  (1.0) (0.8) (0.6) (0.4) (0.2) (0.1)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마. 가산점

○ 우수업체, 중소기업 및 당해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업체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12.6점의 가산점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0	2.0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0	1.0 1.0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0.6	0.3 0.3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0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0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5	-5 (각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 ‘퇴직자 수’ 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 명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협약서 징구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근로계약서 제출 및 착공계 제출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

**※ 제출서류 : 신규직원 채용 협약서**

- 평가대상 : 당해 사업을 위해 채용된 신규직원.

- 평가기준 : 채용인원의 기술등급 및 참여율 점수화

신규인력 채용인원 \* 등급 \* 참여율로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

환산점수 = 기준점수 \* (해당입찰자 점수 / 입찰참가자 최고점수)

(기술인력의 등급에 따른 점수는 ‘참여인력 경력상태평가’의 경력평가점수 표에 의함)

- 당해 사업을 위해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추가 투입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가점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신규직원 채용 협약서」(별지 서식 참조)를 증빙서류로 제출.
- 신규채용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증 등을 제출.
- 입찰공고일 이후 퇴사한 인력을 신규 재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제안서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인력만 명시하여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시 적용하며, 신규 인력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정량적 평가에만 반영됨.
- 기술등급 및 점수표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점 수	5	4	3	2	1	0.5

※ 신규인력 채용부분은 제안서에 표기할 수 없음.

⑧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이내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사실로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내역으로 확인

### 3.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70점 : 상대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70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li> <li>○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li> <li>○ 주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li> <li>○ 주사업자의 품질인증(BS, ISO, KS 등)획득 정도</li> <li>○ 동일분야 또는 유사분야 수행경험(실적)</li> </ul>	15	
조직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li> <li>○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인력</li> <li>-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통신,DB,서버 분야)</li> </ul> </li> <li>○ 유지보수 인력 운용방안</li> <li>○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의 협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범위 및 방안</li> </ul> </li> </ul>	15	
기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 방법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접수, 분석, 복구, 결과보고 등 체계</li> <li>- 심층적 오류분석 체계, 장애대응 및 방안</li> <li>-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li> </ul> </li> <li>○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정보보호, 종합관제시스템</li> </ul> </li> <li>○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수행 방법론 및 세부사항</li> </ul>	15	
비상관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한 중대 장애시 비상유지보수</li> <li>- 협력사(또는 제조사)의 파업 등 발생시 긴급유지보수</li> </ul> </li> <li>○ 장비현황 관리 방안</li> <li>○ 차년도 유지보수 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li> </ul>	15	
품질보증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 방안</li> <li>○ 측정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방안</li> <li>○ 교육, 훈련 제공방안</li> </ul>	10	

## [정성적 평가의 세부평가 방법]

- 평가항목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 상대적 등급평가,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할당(%)	10	20	40	20	10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동일점수 발생시 동점업체 모두를 해당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평가

## 4.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8호, 2012.12.24)」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li> </ul>	
특급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고급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중급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초급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li> <li>·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li> <li>·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기능사 또는 숙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li> <li>·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컴퓨터 수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li> </ul>

- 비교 -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라. 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2. “학력·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전공한 자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보수·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5. 기능사 또는 초급숙련자 등급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보관리 전문분야로 신고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서식 2]

##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소방재난본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7]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A	B	C	D	...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G위원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명을 비 공개

## 열람현황

연번	업 체 명	직 위	연 락 처	성 명	서 명
1					
2					
3					
4					
.					